

#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893
- 제 출 자 : 맹진영 의원(외 13명)
- 제 출 일 : 2017년 6월 7일
- 회 부 일 : 2017년 6월 8일

## 2. 제안이유

- 관련 법령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근거를 신설해 결산에 관한 의회 승인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 신설).

## 4.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결과(2017. 6. 13 ~ 6. 20) : 의견 없음.

## 5.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안 제4조제1항),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안 제4조제2항)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조례에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기금결산보고서를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 및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금번 조례 개정은 집행부의 기금 사용에 대한 의회의 통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에서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법령체계 및 의 연계성 측면에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결 :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다는 구체적 법률적 의사형성 행위

※ 승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동의 등의 뜻으로 사용

- 한편, 조례 제2조에서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근거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는 2016년 11월 「지방재정법」 이 「지방회계법」 과 분법 됨에 따라 관련규정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로 변경 되었는데, 재무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 하여 법체계의 명확성과 조례의 완결성을 가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2조 근거 법령 변경 조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삭제, 2016.11.29.>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2016.11.29.제정, 11.30.시행>
제59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조례 제2조 개정 사항〉

현 행	개정 사항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b>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b>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b>「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b> ----- ----- ----- -----.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